

審 查 報 告 書

2002. 4. 20
총무위원회

1. 審査經過

가. 提出日字 : 2002. 4. 10

나. 提出者 : 瑞山市長

다. 回附日字 : 2002. 4. 11

라. 上程日字 : 2002. 4. 20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自治行政課長 : 崔鎮珪)

가. 提案理由

-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토요일휴무제 도입)
- 휴직을 했다가 복직 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 호소
 -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 개선(연가 수혜범위 확대)

나. 主要骨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 일수를 바로 공제」 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 (아래 산출방식)토록 함.

$$\frac{12(\text{월})-\text{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연도 연가일수}$$

-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 (2001년 6월)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가 전면 도입 될 것에 대비하여 토요일휴무제가 국민경제 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분석,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예정인 「주5일 근무제 시범 실시」에 대한 근거 마련과 휴직자가 복직한 경우의 연가일수 공제방법 등을 중앙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임.
-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 먼저 제16조의2는 「토요일전일근무제」 관련 조항으로서 본조에 「토요일 휴무제」 규정을 추가한 것이며
 - 제20조는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였으며

- 제22조는 관련 상위법의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한 것임.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 256 호
의 결 년 월 일	2002. 04. . (제 회)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2. 04. 10.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6
----------	-----

제출년월일 : 2002. 4. 10.

제출자 : 서산시장

□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토요일휴무제 도입)
- 휴직을 했다가 복직 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
어 고충 호소
-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연가공제방법 개선(연가 수혜범위 확대)

□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
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
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
산하여 공제」(아래 산출방식)토록 함(안 제20조제2항)

$$\frac{12(\text{월}) - \text{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연도 연가일수}$$

-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2001년 6월)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안 제22조)

□ 참고사항

- 충청남도 총무12100-735(2002.03.25)호 (표준안)
-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 심의회 : 필요 없음.
-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포예정보고 : 생략함.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 - \text{당해연도 휴직기간}(\text{월})}{12(\text{월})} \times \text{당해연도 연가일수}$

제2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의2(토요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p>	<p>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p>

현행	개정안
<p data-bbox="138 266 293 305"><신설></p> <p data-bbox="138 1360 714 1779">②지참 조퇴 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8시간을 1일로 계산하며 공제한후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반일연가 1회는 13시를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분</p>	<p data-bbox="751 247 1318 1116">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p> <p data-bbox="760 1166 1071 1199">○휴직자의 연가일수 =</p> <p data-bbox="769 1213 1318 1277">$\frac{12\text{월}-\text{당해연도휴직기간(월)} \times \text{당해연도연가일수}}{12\text{월}}$</p> <p data-bbox="751 1354 1171 1392">③(현행 제②항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하며, 하절기의 반일연가는 5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요일 연가는 반일연가로 처리한다.</p>	
<p>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④(현행 제③항과 같음)</p>
<p>제22조(공가) ①생략</p> <p>5.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p>	<p>제22조(공가) ①(현행과 같음)</p> <p>5.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p>